

# 『미국, 무배출 지게차 규정』 심층분석 보고서

2024. 07.

TBT 통보 여부	통보	HS Code	8427
통보국	미국	전년도 수출규모 (천불) (2023)	877,902
작성기관	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	작성자 문의처	tbt@kotica.or.kr

## [ 목 차 ]

1. 규제 개요 .....	1
2. 개정 세부내용 .....	2
3. 관련 법령 및 표준 .....	5

## 1

## 규제 개요

- (도입배경 및 목적) ‘23.11.20 美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위원회는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‘지게차 제로 배출 규정’의 개정안을 발표
- (규제요지)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위원회 및 환경보호국은 ‘지게차 제로 배출 규정’의 개정안을 발표하여 캘리포니아주 내 지게차 차대 사업자, 제조자, 판매업자, 대여점 등 적용품목 관련 이해관계자의 지게차 판매 금지 및 유예조치를 규정

TBT 통보번호	▪ USA/2066/ADD.1	통보일 고시일	▪ '24.05.23 ▪ '24.05.21
규제명	▪ 무배출 지게차 규정 ▪ Zero-Emission Forklift Regulation		
규제부처	▪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(CARB) ▪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(CARB)		
요구사항 유형	▪ 환경보호 (Protection of the environment)		
제·개정 상태	▪ 개정 초안		
채택일	▪ -		
의견수렴 마감일	▪ '24.06.05		
발효일	▪ -		
준수기한	▪ 계속		

- (적용대상 및 수출규모)

적용대상	▪ 캘리포니아 내에서 하나 이상의 LSI 또는 ZEFs 지게차를 운영, 소유, 임대, 대여, 판매 제안, 장기, 단기임대 제안을 하는 모든 개인, 공공시설, 특별구 또는 정부 기관에 적용		
적용범위	▪ 지게차 배출물 ▪ Forklift emissions		
對 발행국 수출액 (전년기준, 천불)	▪ 877,902	HS Code	▪ 8427

## 2

## 개정 세부내용

## □ (개정 세부내용)

- (주요 개정사항) 캘리포니아 내에서 하나 이상의 LSI 또는 ZEFs 지게차<sup>\*</sup>를 운영, 소유, 임대, 대여, 판매 제안, 장기, 단기임대 제안을 하는 모든 개인, 공공시설, 특별구 또는 정부 기관에 적용
  - \* 정격 용량이 12,000파운드 이상인 클래스 V LSI 지게차로, 차량 운영자가 해비 클래스 V LSI 지게차 보고에 따라 집행 책임자에게 보고한 지게차이며, 명확성을 위해 ‘중량급 V등급 LSI 지게차 보고’로 추가 개정
- (차대사업자) 지게차 차대 사업자는 동 규정에 따라 연간 보고 및 기록관리 요구 사항, 특정 상황에서의 라벨링을 하여야 하며, 단계적 폐지 대상 지게차는 배터리식 또는 연료전지식 ZEF로 대체할 예정임
  - 차대에서 옮겨진 대상 지게차가 낮은 사용량, 긴급 운전, 임시 보관될 경우 규정 준수 면제뿐만 아니라 인프라 건설, ZEF 인도 지역, 타당성 문제 발생시 규정준수 연장이 포함됨

[표 1] 세부 적용일자

적용일자	적용조치	
'26.1.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새로운 대상 지게차를 획득하거나 소유할 수 없음</li> <li>- 중고 2026년식 또는 이후 연도식 대상 지게차를 획득하거나 소유할 수 없음</li> <li>- 차대 사업자를 고용한 상업/정부 기관은 규정안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LSI 지게차의 운영을 책임져야 함</li> </ul>	
'28.1.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6.1.1 이전에 운용된 대상 지게차는 신차년도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기되어야 함</li> </ul>	
적용품목		시행시기
인양능력이 12,000 파운드 이하인 제4종 LSI 지게차	대형 차대(지게차 26대 이상)	2018년식 및 이전 신차년도식 지게차: 2028.1.1.~2035.1.1.까지 적용 - 2025년식 지게차는 단계적으로 폐기되어야 함
	소형 차대(지게차 26대 미만) 및 농업용	2016년식 및 이전 신차년도식 지게차: 2029.1.1.~2038.1.1.까지 적용 - 2025년식 및 이전 신차년도식 지게차는 단계적으로 폐기되어야 함
인양능력이 12,000 파운드 초과하는 제4종 LSI 지게차	대형 차대(지게차 26대 이상)	2025년식 및 이전 신차년도식 지게차 단계적 폐지: ~2035.1.1
	소형 차대(지게차	2025년식 및 이전 신차년도식 지게차 단계적 폐지: ~2038.1.1

적용일자	적용조치	
	26대 미만) 및 농업용	
	인양능력이 12,000 파운드 이하인 제5종 LSI 지게차	2017년식 및 이전 신차년도식 지게차: 2030.1.1.~2038.1.1.까지 적용 - 2025년식 지게차는 단계적으로 폐지되어야 함

  

‘38.1.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게차 차대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용할 중고 2025년식 및 이전 신차년도 대상 지게차를 구매하거나 임대, 대여할 수 있음</li> <li>- 다만, 위에 요약된 적용 가능한 신차년도 단계적 폐지 일정에 따라 아직 단계적으로 폐지가 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</li> <li>-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용할 2026년식, 2027년식, 2028년식 제5종 대상 지게차 대여 가능함</li> <li>- 차대 사업자가 인양 능력이 12,000 파운드를 초과하는 제5종 LSI 제거 차를 이와 동등한 ZEF로 대체한 경우 해당 일자까지 지게차의 단계적 폐지를 연기할 수 있음</li> </ul>
---------	--

- (제조업자) 지게차 제조업자는 탄소배출제로 지게차에 사용되는 엔진과 파워트레인에 대한 새로운 탄소배출제로 표준 제정 예정

**[표 2] 세부 적용일자**

적용일자	적용조치
‘26.1.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하거나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를 제안하기 위해 제4종 대상 지게차를 신규 생산할 수 없음</li> </ul>
‘29.1.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기 위해 제5종 대상 지게차를 신규 생산할 수 없음</li> <li>-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되었거나 판매하기 위해 생산된 모든 LSI 지게차에 대한 생산 및 판매 정보를 행정관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함</li> </ul>

- (판매업자) 지게차 판매업자는 판매업자가 신규 대상 지게차를 다른 주의 구매자 또는 비상사태 전용 지게차를 운영하는 차대 사업자에게 판매 및 전달의 면제 조항이 포함됨

**[표 3] 세부 적용일자**

적용일자	적용조치
‘26.1.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판매업자는 다음을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2026년식 및 이후 연도식 제4종 대상 지게차</li> <li>• 신규 제4종 대상 지게차</li> <li>• 소형 차대 및 농업용 제4종 LSI 지게차에 대한 단계적 폐지 일정에 따라 이미 단계적으로 폐지된 2025년식 및 이전 연도식 제4종 대상 지게차</li> <li>• 제5종 LSI 지게차에 대한 단계적 폐지 일정에 따라 이미 단계적으로 폐지된 2025년식 또는 이전 연도식 제5종 대상 지게차</li> </ul> </li> <li>- 판매업자는 다음의 지게차를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차대 사업자에게 판매하거나, 임대하거나, 판매를 제안하거나, 임대를 제안하거나, 인도</li> </ul>

적용일자	적용조치
	<p>할 수 없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신규 대상 지게차</li> <li>• 중고 2026년식 또는 이후 연도식 대상 지게차</li> <li>• 전술한 신차년도의 지게차가 적용 가능한 일정에 따라 이미 단계적으로 폐지된 경우, 2025년식 또는 이전년도식 대상 지게차</li> <li>• 제5종 대상 지게차의 경우, 판매업자는 소형 차대 및 농업용에 대한 단계적 폐지 일정에 따라 지게차가 단계적으로 폐지되었는지를 결정하여야 함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판매업자는 다음의 지게차를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대여점에게 판매하거나, 임대하거나, 판매를 제안하거나, 임대를 제안하거나, 인도할 수 없음</li> </ul> </li> <li>• 신규 제4종 대상 지게차</li> <li>• 중고 2026년식 또는 이후 연도식 제4종 대상 지게차</li> <li>• 전술한 신차년도의 지게차가 소형 차대 및 농업용 제4종 지게</li> </ul>
'29.1.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판매업자는 2026년식 및 이후 연도식 제5종 대상 지게차를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</li> <li>- 판매업자는 다음의 지게차를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대여점에게 판매하거나, 임대하거나, 판매를 제안하거나, 임대를 제안하거나, 인도할 수 없음</li> <li>• 신규 제5종 대상 지게차</li> <li>• 중고 2026년식 또는 이후 연도식 제5종 대상 지게차</li> </ul>
'38.1.1	- 판매업자는 모든 대상 지게차를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

- (대여업자) 지게차 대여점은업자는 차대 사업자와 동일한 신차년도 단계적 폐지 일정이 적용

[표 4] 세부 적용일자

적용일자	적용조치
'26.1.1~ '28.12.3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5종 대상 지게차를 대여용 지게차로 획득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</li> <li>- 해당 대여 조항은 '38.1.1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되어야 함</li> </ul>
'26.1.1	- 연간 보고 및 기록관리 요구사항이 추가됨
'38.1.1	- 인양 능력이 12,000 파운드를 초과하는 제5종 LSI 지게차를 이와 동등한 ZEF로 대체한 경우 대상 지게차의 단계적 폐기를 '~'38.1.1까지 연기할 수 있음

관련 법령 및 표준

- 캘리포니아주 규정집(CCR), 타이틀 13의 섹션 2433, 2775
- 캘리포니아주 보건안전법, 섹션 39600, 39601, 43013, 43018, 43101, 43102, 43104 및 특정 섹션 43013, 43017, 43018, 43101, 43102, 43104, 43105, 43150, 43151, 43152, 43153, 43154, 43205.5, 43211, 43212
- 미국표준협회, “야지용 지게차에 대한 안전 표준”, 2021, ANSI B56.6-2021
- 미국표준협회, “차량 장착용 지게차에 대한 안전 표준”, 2020, ANSI B56.14-2020.
- 미연방규정집 타이틀 29, 파트 1910.147(b)[2011년 6월 25일 최종 수정된 것 포함]